4. 상업세 수취와 대외무역

순천지역 장시에 출하된 상품에 대해서는 임원십육지』에 조사된 기록이 있는데, 임원십육지』는 각 군현의 장시 중 부내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명을 적어두었다. 순천의 부내장에는 요미(饒米), 두(豆), 모(麰:밀), 맥(麥), 면화, 면포, 지지(紙地:종이), 목물(木物), 죽물(竹物), 연초(烟艸), 마(麻), 혜(鞋:신발), 균(菌:버섯), 석(席:돗자리), 석류(石榴), 서고(西苽), 면어(鯢魚:조기), 치어(鯔魚:숭어), 건복(乾鰒:전복), 해삼(海蔘), 나합(螺蛤:소라), 팔초어(八梢魚), 은구어(銀口魚), 해의(海衣:김), 염(鹽) 등 각종 농산물과 해산물・수공업제품 등의 상품이 유통되었다.

순천의 지역적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이 나는 것은 당연하며 기타 농산물이나 수공업 제품도 특산물이었다. 그 중 면포의 거래는 당시의 조세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7세기 전반 이후 정부의 조세체제는 면포의 수취를 강화하고 있었다. 일반농가의 면포생산은 농가의 생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조세로 납부되었다. 물론 순천지역은 면화의 생산지역이어서 일반농가에서 면포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가에서 면포를 생산할 수 없으면 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라도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장시는 면포를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전국의 장시 중에서도 면포가 쌀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거래품목이었던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조세운영체제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장시는 조세납부를 위한 면포의 조달을 위해서라도 일반농민에게 필요한 공간이었던 셈이다.

이들 장시에 대해 관아에서는 장세(場稅)를 받았다. 장시에 대한 정세는 지방관아의 재정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농업 중심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16세기 이래 증가하고 있던 장시를 혁파하려는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방관아의 입장에서는 면포구입을 통한 조세납부를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이어서 정부의 장시개설 금지명령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즉시 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장시에서 거두는 장시세가 지방관청의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므로 장시 증설은 중앙정부의 명령으로 금지될 수 없었다. 따라서 후기로 갈수록 중앙정부의 장시에 대한 논의는 장시개설의 폐단문제에서 장시에서 잡세수취를 금지할 것인지, 용인할 것인지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이미 1618년 증평지』를 편찬할 당시 순천의 장시에서는 장세(場稅)를 거두고 있었다. 이때 개설된 두 개의 장시, 곧 부내장과 광천장에서는 모두 장세를 거두어 회록(會錄)하고 있었다. 그런데 1729년 만들어진 친증승평지』를 보면 "모두 지금은 수세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뒤집어보면, 그 이전에는 수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수세를 하지 않게 된 것은 당시의 장세수취금지령과 관련이 있다. 1725년(영조 1) 시독관(侍讀官) 황재(黃梓)가 계를 올려 외방 장시에서 진자(賑資)에 보충해 사용하기 위해 소읍 (小邑) 소장(小場)의 50~60명이 모이는 곳까지 장세를 받지만 이것을 진휼에 사용하지 않고 절반은 관리들이 사사로이 쓰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영조는, 기민(飢民)을 진휼하기 위해 장세를 수취한다고 하나 장시의 민중도 역시 같은 백성이므로, 각 도에 지시해 장세수취를 금지하라고 명했다." 따라서 그후 4년 뒤에 만들어진 친증승평지』에 장시에서 수세를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금지령은 오래 가지 못하고, 같은 영조연간인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수세가 가혹해 남세(濫稅)의 폐단마저 지적되고 있었

¹⁾ 白承哲. 朝鮮後期 商業論과 商業政策』,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6, 58쪽,

²⁾ 비변사등록』78책, 영조 원년 12월 19일조.

다.³ 그러므로 순천 장시의 경우에도 진증승평지』가 저술되던 시기를 제외한다면, 장세의 수취는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항 이후에도, 상행위에 각종 잡세를 수취하던 관행은 그대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 이르면, 포구나 장시 등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상업세의 수취를 통해 지방관아의 재정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아문(衙門)을 운영하는 재정에도 보용하고 있었다. 특히 많은 양의 상업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독점적 상행위를 하는 도고(都賈)상인들에게 수세가 집중되었다. 19세기에 이르면 도고상인과 같은 상당량의 자본을 가진 민간상인이 성장하게 되고, 유통경제의주역도 시전(市廛)을 중심으로 하던 관상(官商)체제에서 민간의 사상(私商)체제로 이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도고상인은 각종 상품을 매점하고 상품가격을 등귀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고행위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어서 관권(官權)을 이용해 도고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도고 혁파를 항상 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그 사정은 개항 이전이나 개항 이후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재정이 일원화되지 않고, 각 아문이나 지방관아의 재정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조선시대 재정운영의 특성상 상업세를 집중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도고상인을 혁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중앙의 아문이나 지방관아에서 도고를 차정(差定)해 상업세를 수취하고 재정에 보용하는 관행은 일반적 현상이었다. 대개의 경우 도고로는 객주가 차정되어 상품거래의 과정에서 상품거래의 수수료인 구문(口文)과 함께 관아에 납부할 상업세를 수취했다.

그런데 갑오개혁으로 재정이 일원화되기까지는 중앙의 아문이나 지방관아가 모두 각기 재정을 스스로 충용해 사용해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상행위에 대한 수세에도 중앙과 지방의 관아가 상호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1887년(고종 24)에는 당시 개화정책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던 통리아문(統理衙門)에서 차임한 감관(監官)을 순천지역으로 보내 포구와 장시에서 수세하여 재정운영에 보충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순천의 관아에서는 도고를 차정해 상행위에 대한 수세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순천관아의 도고가 스스로 도고 중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도도고(都都賈)라 칭하고, 통리아문의 감관을 순천 밖으로 쫓아내었다. 이 때문에 상납할수세액을 이들이 중간에 착복한다고 통리아문에서는 순천의 관아를 문책하고 있었다.

상행위에 대한 수세에는 중앙정부나 지방관아만이 아니라 왕실도 개입되어 있었다. 왕실의 재정에도 이 같은 수세와 상납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인의 입장에서도 왕실이나 관권과 결탁함으로써 다른 관아나 아전배의 침탈을 막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개항이후 각 지방의 객주와 같은 상인들은 관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1893년(고종 30) 순천의 포구인 천라좌도순천부신양포도여각완문(全羅左道順天府新陽浦都 旅閣完文)』에는 이 같은 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원래 상선의 출입이 활발하던 신양포에서는 여러 객주・여각들이 출입선박에 대해 상거래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신양포의 상행위에 대해 수세를 함으로써 재정에 보충하고자 했던 왕실의 명례궁(明禮宮)에서는, 도여각주인(都旅閣主人)을 차출해 내려보내고, 다음과 같은 절목(節目)으로 수세하고 상납케했다.

즉, 상납세액은 당오전(當五錢) 5,000냥을 12월에 납부하도록 하고, 도여각이 수세하는 것 이외의 잡세는 일체 혁파하며, 상품거래의 수수료는 10분의 1을 받는다. 또 감영이나 군영, 지방관아가 수세를 위해 상품을 실은 선박을 집류하거나 간섭하는 폐단은 모두 금지하며, 출

³⁾ 金大吉. 朝鮮後期 場市에 대한 硏究』,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3, 155쪽,

입선박을 사사로이 조정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를 도여각이 규찰해 엄히 정치하고, 다른 관아에서 포구의 상민에 대해 침탈하는 것을 엄격히 정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명례궁의 도여각만이 신양포의 모든 상행위에 대해 수세할 수 있고, 다른 아문이나 관아·군영 등에서 수세할 수 없도록 막음으로써, 신양포는 명례궁의 독점적 수세상납 포구가 되었다.

한편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일본은 공업지대에서 저미가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자국의 자본 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조선의 곡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로써 조선의 곡물 유통구조는 심각한 변동이 야기되었다. 원래 조선 후기 이래 흉작이 들경우, 지방관들이 행정의 강제력으로 곡물유출을 차단하는 방곡(防穀)을 시행함으로써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개항 이후에도 지방관들은 방곡을 시행하여 관할지역 밖으로 곡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곡물의 구입이 어려워진 일본상인들이 이에 항의하여 방곡령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중앙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압력을 고려해지방관에게 방곡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순천지역에서도 방곡령이 내려지고 곡물유출을 금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1890년 양력 3월에서 6월 사이에 전라좌수사가 수영(水營)지역에 방곡령을 내려 이해 3월 일본상인 미산가일(梶山嘉一)은 쌀을 매입해 부산으로 수송하려다가 운반 정지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1892년 3월에는 순천을 비롯해 광양・흥양・영광・구례・부안・만경・나주・강진 등 전라도 각지에서 수령들이 방곡을 실시하자 일본공사가 조선정부에 항의함으로써 철폐되기도 했다.

같은 해 양력 12월에는 중앙정부의 지시로 부안 등 12개 읍에 전라감사가 방곡령을 발포하게 되었다. 이때 12개 읍에 순천이 포함되었는지는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월에 발포된 9개의 방곡령 실시지역과 대부분 지리적으로 겹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차이가 그리 나지 않아 아마 순천도 이때의 방곡 실시지역에 포함되었다고 짐작된다. 원래지방관의 방곡에 대해 정부는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때의 방곡은 중앙정부의 지시로 전라감사가 실시했다. 그 이유는 1892년의 흉작으로 서울의 쌀값이 급등하여 곡물사정이 악화되자, 서울의 곡물수급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전라도 곡물의 국외유출을 막음으로써 곡가를 안정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방곡으로 곡물의 매집이 곤란해진 일본상인들이 부산의 일본영사에게 호소하게 되었고, 일본영사는 부산항의 감리(監理)에게 항의했다. 이 때문에 전라감사는 중앙정부에 방곡의 완화를 요청했고, 정부도 1888년과 1889년의 황해도·함경도 방곡령사건 때 일본의 격렬했던 항의를 상기해 즉시 철폐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1893년 양력 2월에도 전라좌수사가 방곡의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전라좌수사의 방곡은 1890년과 1893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1893년의 경우 전반적 흉작이어서 방곡실시의 일반적 사례와 일치한다. 그러나 1890년에 실시한 방곡은 전해부터 계속 풍작이던 것으로 보아, 좌수영의 군량미 확보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방곡을 통해 상인의 곡물을 집류하고 상업세를 수취하던 전래의 수세방식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아무튼 잦은 방곡의 실시는, 순천지역 역시 일본자본주의의 침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

⁵⁾ 坠羅左道順天府新陽浦都旅閣完文』(光緒十九年).

⁶⁾ 釜山港監理署日錄』, 庚寅 윤2월 16일조.

⁷⁾ 全羅道關草』4책, 壬辰 2월 25일.

⁸⁾ 원라도관초』4책, 壬辰 11월 23일 完營報.

⁹⁾ 日案』, 고종 30년 1월 4일조.

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상인들은 곡물을 수입해가는 대신 옥양목이나 조선의 목면을 흉내내서 만든 백목면 등 섬유제품을 비롯한 자본제 상품을 조선에 가져와 판매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르면 순천의 상품유통경제도 장시를 매개로 한 향촌사회 내부의 유통영역이나 포구를 통한 국내 원격지간의 교역범주를 넘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포섭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비변사등록』.

진증동국여지승람』,

등보문헌비고』.

湖南沿海形便圖』.

自案』.

統署日記』.

釜山港監理署日錄』.

全羅道關草』.

昇平志』場市條.

林園十六志』.

최완기, 「조선후기 漕運試考」, 백산학보』20, 1976.

김창수, 「교통과 운수」,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77.

한상권, 「18세기말~19세기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경상도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17, 1981.

이경식, 「16세기 장시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57, 1987.

김대길. 「18~19세기 지방장시에 대한 일고찰」. 김용덕정년기념사학논총』, 1988.

김대길, 호선후기 장시에 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3.

고동환, 18 · 19세기 서울 경상지역의 상업발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